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27] <신설 2024. 7. 31.>

자동차폐차사원증(제139조제1항 관련)

(앞쪽)

자동차폐차사원증

사진
(3㎝×4㎝)

성명 표기

업체명 표기

60㎜×90㎜[보존용지(1종) 120g/㎡ 또는 플라스틱]

(뒤쪽)

사원증 번호:

유 효 기 간:

업 체 명:

성 명:

생 년 월 일:

사업장 주소: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153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해체재활용사업자의 종사원임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발급기관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 직인

60㎜×90㎜[보존용지(1종) 120g/㎡ 또는 플라스틱]

비고

자동차폐차사원증의 성명, 업체명 및 뒤쪽의 사원증 번호 등은 다음의 글자크기 및 글자체로 표시해야 한다.

	성명 (앞쪽)	업체명 (앞쪽)	사원증 번호	유효 기간	업체명 (뒤쪽)	성명 (뒤쪽)	생년 월일	사업장 주소	발급 일자
글자 크기 (포인트)	13	13	9	9	9	9	9	9	9
글자체	헤드라인체		굴림체						